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육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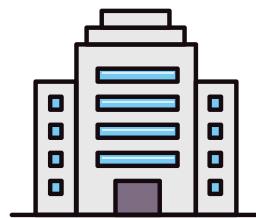


'교권보호 5법'으로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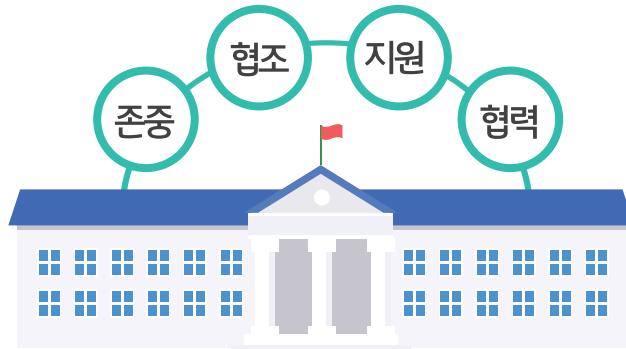
선생님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신설)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신설)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호자의 권리-책임 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 존중 의미 부여



‘교권보호 5법’으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보호

- ✓ 학교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합니다.
- 『교원지위법』에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및 피해교원과 가해자 분리 조치 명시

- ✓ 교육감은 소속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지위법』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명시



왜 ‘교권 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인가?

교원의 수업권 보호

학부모의 긍정적 교육 참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면 교육현장에 큰 피해가 되므로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개념

✓ 교원지위법 제 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2023. 9. 27.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보호자 및 그 밖의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

침해대상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 교원(시간강사, 방과 후 강사, 돌봄 전담사 등 불포함)

침해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명예훼손

공연히(대화자 이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특정 교사가 아동학대범이라는 허위事實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유포한 경우
- 다수의 사람이 있는 교무실에서 특정 교사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한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얘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례

모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모욕적인 언행 모두 포함)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듣게 된 경우
-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대하여 '○○선생은 자격 미달이다.' 등의 비하발언을 SNS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이 있는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원의 영상 회상 음성 무단 배포

- 집에서 자녀가 원격 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장면을 촬영, 단톡방에 무단 배포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희화화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
- 타인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교사와 녹음한 내용을 배포하는 경우 → 법적 문제 발생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나 문자로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는 요구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
-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변경, 추가, 삭제 요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유 해당)

학부모의 민원은 정당한 권력행사의 한 측면이나, 이의 제기 및 의견제시 과정에서
모욕적, 폭력적 행동 등을 할 경우 →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초과한 부분**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반복적 부당간섭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제) 2조 제3호].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 2024. 3. 27. 까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 2024. 3. 28. 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2023. 9. 27개정)(2024. 3. 28.시행)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의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아니나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목적**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 **기능**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실 둘러보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절차

초기개입

- 피해교원 안전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보호조치 및 사안조사

- 피해교원 보호조치
- 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안 조사

보호조치 결정 및 처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 침해 인정 여부 심의
- 조치 심의·의결
- 조치결과 서면 통보



(필요시)

시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이의 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분리방법 즉시 결정



침해 학생 등 분리

피해 교원에게
분리의사 확인
(분리의사 확인서 작성)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 가능)

최대 7일 이내
침해 학생(보호자)에게
통보

분리기간

-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 기간에 산입(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도 분리 기간에 포함



피해교원 보호조치

- 피해교원 보호조치(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2023. 9. 27.개정>

- ① 특별휴가(5일 이내)
- ② 심리상담 및 조언
-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그 밖에 치료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비정기 전보 요청 등)

- 보호조치 비용(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2023. 9. 27.개정>

-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교원이 시교육청에 치료비 등을 선지급 요청 할 경우, 시교육청은 비용을 부담 한 후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음

※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비용 신청 우선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자 부담원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법조항	내 용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5항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35조(과태료)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 25조)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처분

※ ‘조치 없음’ 결정 시 학생 조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조치할 수 없음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 <2023. 9. 27. 신설>

- ①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 및 불복

▶ 침해자(학생 및 보호자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교육장이 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 2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

학 생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와 관련법령 이해하기
-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학부모(보호자)

-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알기
- 보호자의 민원 제기 시 유의사항 인지
- 모든 학생의 학습권 존중하기

교 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재정립하기
- 상호 존중의 교육활동 문화 조성





이럴 땐 이렇게 소통해요

◉ 자녀에게 안전사고가 난 경우

Q

제 아이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절차 및 출결, 그리고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담임 선생님께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학생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 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먼저 아이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하는 것보다, 좀 진정을 한 뒤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소통해요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Q

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제 아이도 피해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폭력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소통해요

○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Q

제 아이의 두발상태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생활지도 관련하여 학교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A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징계, 평가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자녀의 두발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소통 시스템 개선

- 학부모 상담 사전 예약제 등 시스템 개선
-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제한을 통한 교육권 보호
- 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가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학부모의 학교방문 절차

-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을 예약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또는 경비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기록을 남깁니다.
- 방문증을 패용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부모(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존중해 주세요!

민원 제기 전에!

- 문의는 근무 시간 내에
-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서
-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를 믿어 주세요.
- 감정을 가라앉혀요.
-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교육활동 보호는
행복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